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18 선고 2021가단1230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. 21.

판 결 선 고 2022. 2. 18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45,816,498원과 그 중 19,984,754원에 대하여 2021. 6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19. 5. 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 2. 자백간주에 의한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조미옥

별지